

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단체명(법인명)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	
	주소				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

